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(굴토, 구조, 철거) 심의의결서

(2021년도 제12차)

심의일자	서면심의	심의번호	전문-12-3
신청위치	송정동 72-139	건 축 주	
규모/용도	지상3층, 지하1층, 연면적 159.25㎡ / 다가구주택, 근린생활시설		
심의(자문) 신청내용	굴토심의 (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건축물 위치)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의견]

- 굴착영향 검토: 굴착 공사시 인접 노후건축물 및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 등 영향검토 ① 흙막이 가시설 및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② 현장 인접건물 및 도로 계측관리 ③ 소음,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관리
- 민원발생 대책수립 : 대상 건축물 및 인접 도로에 대한 사전, 사후조사 등
- 굴착계획단면도를 보면 굴착현장과 인접하여 지하층이 없는 건물들이 위치하므로 흙막이벽체 C.I.P와 차수그라우팅의 설치심도를 Side pile 설치심도와 동일하게 흙막이 벽체 근입심도까지 증가하여 안전하게 계획하기 바람
- 계측계획평면도에 굴착영향범위(굴착깊이의 2배)에 해당되는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(준공년도, 지하/지상 층수, 기초 및 구조형식 등)을 표기하고, 인접 건축물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인 경우 건물경사계와 균열측정계는 건물 당 최소 2개소 이상 복수로 설치하기 바람
- 또한 계측계획평면도에 당 현장 계측관리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
- 계측계획단면도를 추가하여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의 설치심도 및 설치위치(흙막이 벽체와 이격거리)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

※ 공사장 인접 건축물에 IoT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 실시하시기 바람

· 공사장 인접 건축물: 1) 흙막이벽체에서 1.2H 이내 위치한 모든 건축물

2) 흙막이벽체에서 2.0H 이내 위치한 1·2종 시설물 및 노후건축물